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2. 3 선고 2020가합104685 판결 [정산금 청구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이한무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3. D

4. 주식회사 E

피고 2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준

5. 주식회사 F

6. 주식회사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임종석

변 론 종 결 2021. 10. 29.

판 결 선 고 2021. 12. 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551,693,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① 별지목록 기재 순번 제1 내지 10, 12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주식회사 E사이에 체결된 2018. 6. 7.자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같은 대물변제계약을 피고 F, 피고 G와의 관계에서도 취소하며, 피고 주식회사 E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6. 8. 접수 제55610호로 마친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F는 피고 주식회사 E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5. 26. 접수 제59172호로 마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주식회사 G은 피고 F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5. 26. 접수 제59175호로 마친 위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② 별지목록 기재 순번 11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D 사이의 2018. 9. 10.자 매매계약을 569,75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같은 매매계약을 같은 범위에서 피고 F, 피고 G와의 관계에서도 취소하며, 피고 D, 피고 F, 피고 주식회사 G은 각자 원고에게 569,7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금원을 지급하라. ③ 별지목록 기재 순번 13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 사이의 2018. 9. 10.자 매매계약은 551,00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같은 매매계약을 같은 범위에서 피고 F, 피고 G와의 관계에서도 취소하며,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F, 피고 주식회사 G은 각자 원고에게 55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 1) 원고와 피고 C은 군대 선·후임으로 만나 알게된 사이로, 별지 목록 기재 천안시 동남구 H 소재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인 I(이하 건물 전체를 통칭할 때에는 'I'라 하고, 별지 목록 표 기재 I 구분소유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 하며, 이 사건 각 점포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때에는 '이 사건 ○○○호'라 한다) 건축을 위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 2) 피고 C은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배우자이다.
- 3) 피고 F는 이 사건 각 점포를 피고 C, D, E로부터 이전받았다가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에게 담보신탁을 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각 점포는 피고 G이 소유하고 있다.

나. B 설립 등 및 배당 협약

- 1) 원고와 피고 C, J은 I 신축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 C이 각 3억 원을 투자하고 J의 배우자 K을 대표이사로 하여 B를 설립하였다. B의 주식은 K에게 5,200주, 원고와 피고 C에게 각 2,400주씩 배정되었다. I는 2017. 12. 14.경 완공되었다.
- 2) 원고와 피고 B, 피고 C, K은 2018. 1. 2. I 신축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배당금 2,763,000,000원을 원고, 피고 C, K에게 각 891,000,000원 배당하기로 하되, 배당 시기는 2018. 4. 30.로 하며, K의 배당금 중 470,000,000원은 배당 즉시 피고 E에 대한 채무에 최우선변제하고, 원고와 피고 C의 배당금은 위 두 사람이 설립한(지정한) 법인으로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협약서를 작성하였다.
- 3) 피고 B는 2018. 3. 15. 원고와 피고 C에게 위 배당 협약상 배당금 891,000,000원을 2018. 4.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인 L 사무소 증서 2018년 제21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1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 변동 경과

피고 B가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2018. 6. 8.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친 후 나머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된 경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1차 소유권

이전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이전행위’라 하고, 이 사건 각 이전행위 중 피고 E에 대물변제된 것을

‘이 사건 각 대물변제’라 하며, 피고 C, D, E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된 것을 ‘이 사건 각 매도’라 한다).

호수	면적 (㎡)	소유권보전 (18.6.8)	1차 이전			2차이전 (20.5.26)	3차이전 (20.5.26)
			소유자	이전일	이전원인 거래가액		
M호	80.145	B	E	2018.6.8.	대물변제	F	G
N호	69.1696	〃	〃	〃	〃	〃	〃
O호	90.652	〃	〃	〃	〃	〃	〃
P호	35.3075	〃	〃	〃	〃	〃	〃
Q호	82.4569	〃	〃	〃	〃	〃	〃
R호	80.145	〃	〃	〃	〃	〃	〃

S호	80.145	〃	〃	〃	〃	〃	〃
T호	69.1696	〃	〃	〃	〃	〃	〃
U호	90,652	〃	〃	〃	〃	〃	〃
V호	35.3075	〃	〃	〃	〃	〃	〃
W호	413.3526	〃	D	2018.9.21.	2018.9.10.자 매매 1,300,750,000원	〃	〃
X호	414.8726	〃	E	〃	2018.9.10.자 매매 1,209,375,000원	〃	〃
Y호	344.3611	〃	C	〃	2018. 9.10.자 매매 1,118,000,000	〃	〃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C, D,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 내지 10호증, 을나 제 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 B는 원고에게 I 신축공사로 인한 배당금 89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배당금 중 339,306,1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551,693,850원(= 891,000,000원 - 339,306,150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일인 2018. 4. 30.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B에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1. 24.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본안 전 항변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 C, D, E

원고는 피고 B 설립에 투자한 사람으로서, I의 건축 과정과 이 사건 각 점포가 피고 E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이전된다는 사실을 그 이전 시점인 2018. 6. 8.경부터 잘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 원고는 2019. 8.경 이 사건 각 점포에 Z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업무협약까지 체결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두 시점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 E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2018. 6. 8.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10. 16.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원고

피고 C이 원고에게 I의 분양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점포의 소유권을 피고 E에 임시로 이전해둔다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는 그 말을 믿었고, 원고가 피고 E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점은 2020. 8. 29.경이다. 그로부터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20. 10. 1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2)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호증, 갑 제11호증의2,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 C와 함께 투자하여 피고 B를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보다는 피고 C이 I 건축과 분양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 B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는 것 외에 I의 건축, 분양 과정에 세부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는 없는 점, ② 이렇듯 원고가 이 사건 각 점포의 건축, 분양과정을 소상히 알지 못하고, 배당협약서에 따른 배당금도 배당 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점포의 분양이 조속히 마쳐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분양을 위하여 한시적·형식적으로 피고 E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피고 C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③ Z병원의 업무협약 당사자로 원고 뿐 아니라 피고 C와 AA도 참여하였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점포의 조속한 분양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 협약에 참여하였을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이전행위 당시 사해행위를 의심하여 이 사건 각 점포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본다거나 피고 C에게 따져 물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D, E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0. 10. 16.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각 점포가 피고 E, C, D에게 이전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피고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피고 E, AB, D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정산금 채권 551,693,850원을 가지고 있고, 피고 B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약 6억원 가량 많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점포 중 일부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소유권 이전하고, 더 나아가 나머지 점포를 피고 C, D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고, 그 결과 책임재산의 부족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이전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채권액 551,693,850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점포 중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 C, D, E

이 사건 각 이전행위 당시 채무자인 피고 B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

다) 피고 G

이 사건 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피고는 피고 F에게 대출을 실행한 AC조합의 의뢰로 이 사건 각 점포를 담보신탁 받은 것일 뿐이어서 선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정산금 채권 891,000,000원은 이 사건 각 이전행위가 있기 전인 2018. 4. 30.경 발생하였으므로, 위 정산금 채권 중 변제되지 않고 잔존한 551,693,850원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피고 B의 채무초과 여부

가) 관련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는 당해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천안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갑 제15호증의1, 을나 제3호증의1,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이전행위 당시 피고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 B의 2018.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2,914,003,426원, 부채총계가 3,507,256,138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593,252,712원 초과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각 대물변제는 2018. 6. 8.에, 이 사건 각 매도는 2018. 9. 10.경 있었던 바, 위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 경과한 2018.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된 위 표준대차대조표는 이 사건 각 이전행위 당시의 피고 B의 자산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자료로 보기 부족하여, 위 표준대차대조표상 부채가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해행위 당시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3) 이 사건 대물변제와 매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으므로 대물변제와 매도행위 시점별로 피고 B가 무자력 상태였는지를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대물변제 시점(2018. 6. 8.)의 무자력 여부를 보면, 대물변제 당시 이 사건 매도대상 점포는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 잔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피고는 앞서 든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매도가액의 합계액인 3,628,125,500원 규모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물변제 당시 피고 B의 부채가 위 매도가액과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 시점에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매도행위 시점(2018. 9. 10.)의 무자력 여부를 살핀다.

앞서 본 표준대차대조표의 작성 기준일인 2018. 12. 31.경 피고 B는 I건물 AD호(41.1469㎡), AE호(38.9025㎡), AF호(37.66㎡), AG호(37.8525㎡), AH호(40.82㎡), AI호(34.2875㎡) 총 6개의 점포를 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AD호가 채권최고액 291,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2019. 1. 24. 526,750,000원에 분양되었다. 위 분양가액은 위 대차대조표 중 I 건물 자체에 대한 가액을 계상한 계정과목인 '재고자산 1,373,560,627원'의 38%에 달하는 금액인데, 면적이 대동소이한 나머지 점포들의 분양가액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 가액은 분양가나 시가가 아닌 I 건축에 소요된 순수 원가만을 산정한 것으로서 실제 분양가나 시가보다 훨씬 하회하는 금액이어서 위 대차대조표 작성 시점에 위 6개 점포의 실제 가치를 반영한 가액은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과 자산총액의 차이인 593,252,712원을 상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6개 점포들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달리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도행위 당시 피고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존재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매도행위로 말미암아 위 피고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이전행위 당시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원, 판사 양지혜, 판사 권종현

별 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건물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AJ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제1,2층 근린생활시설

지3층 141.9875㎡	지2층 463.2343㎡	지2층 135.305㎡
지2층 35.84㎡	지1층 639.7512㎡	지1층 35.84㎡
지1층 8.3915㎡	1층 516.6416㎡	2층 569.441㎡
3층 569.441㎡	4층 478.9926㎡	5층 481.1126㎡
6층 481.1126	7층 482.6326㎡	8층 482.6326㎡
9층 412.121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H 대 825.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순번	건물번호	건물내역	대지권의 비율
1	AK	철근콘크리트구조 80.145㎡	825.9분의 18.4486
2	AL	철근콘크리트구조 69.1696㎡	825.9분의 15.9222
3	AM	철근콘크리트구조 90.652㎡	825.9분의 20.8672
4	AN	철근콘크리트구조 35.3075㎡	825.9분의 8.1274

5	AO	철근콘크리트구조 82.4569㎡	825.9분의 18.9808
6	AP	철근콘크리트구조 80.145㎡	825.9분의 18.4486
7	AQ	철근콘크리트구조 80.145㎡	825.9분의 18.4486
8	AR	철근콘크리트구조 69.1696㎡	825.9분의 15.9222
9	AS	철근콘크리트구조 90.652㎡	825.9분의 20.8672
10	AT	철근콘크리트구조 35.3075㎡	825.9분의 8.1274
11	AU	철근콘크리트구조 413.3526㎡	825.9분의 95.1497
12	AV	철근콘크리트구조 414.8726㎡	825.9분의 95.4996
13	AW	철근콘크리트구조 344.3611㎡	825.9분의 79.2686

. 끝.

